#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77

발의연월일: 2024. 8. 6.

발 의 자:양문석・김우영・이기헌

서미화 · 김문수 · 문진석

김승원 · 김재원 · 김현정

허성무 • 박해철 • 민병덕

이재강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(포털 사이트 사업자)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수 있으며,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%에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.

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 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 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 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 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 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"를 "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 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 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	제10조(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
의 준수사항) ① 인터넷뉴스서	의 준수사항) ①
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	
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	
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<u>그 기본</u>	고의적
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	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여 언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
라 공개하여야 한다.	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
	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
	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기
	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
	야 한다.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
	항까지와 같음)